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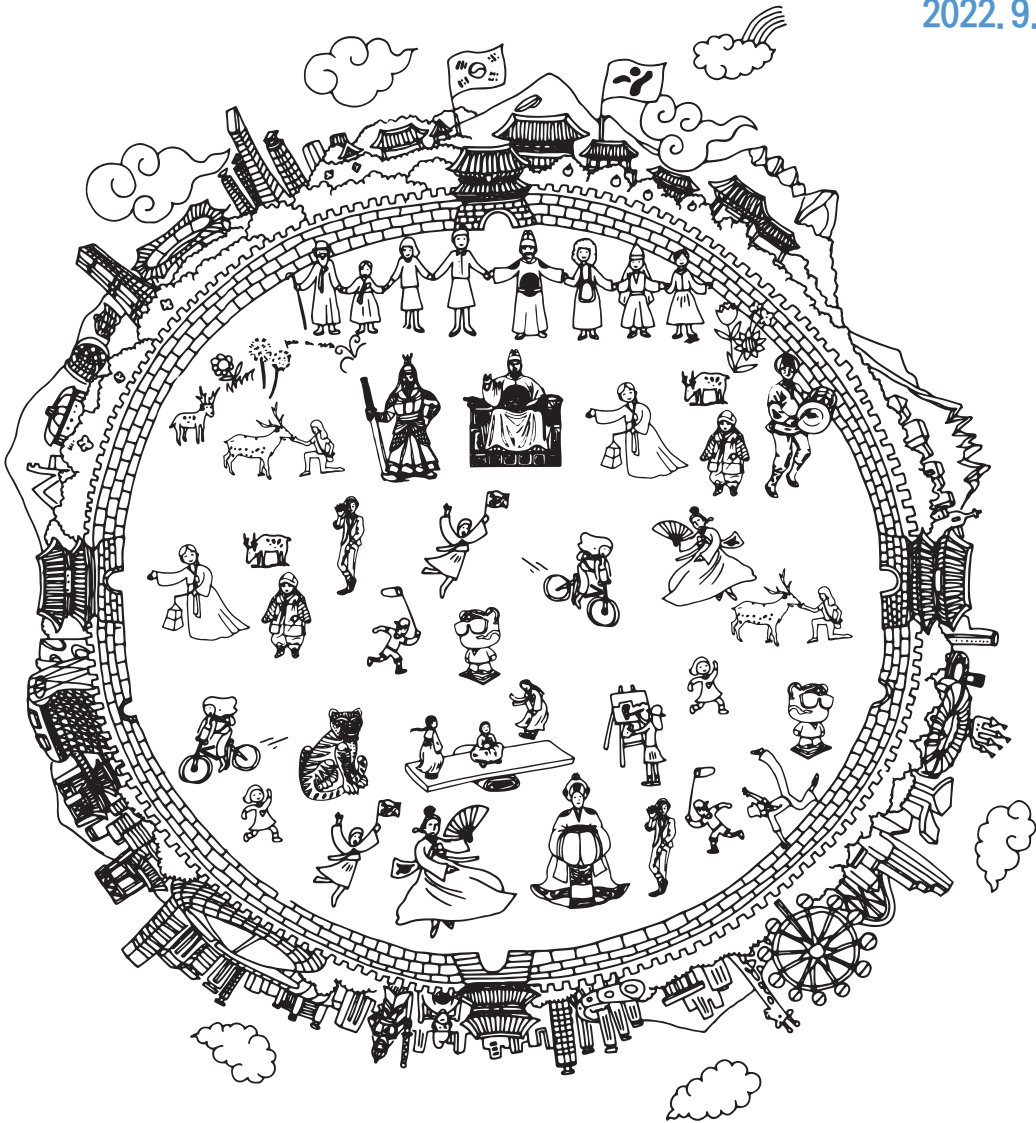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814호
2022. 9. 16.(금)



목 차

◆ 고 시

제2022-390호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	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90호

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

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2년 9월 16일
서울특별시장

1. 명 칭 :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
2. 결정 근거 :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
3. 수립 목적
 -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
4. 적용 기간 : 2023. 1. 1. ~ 2023. 12. 31.
5. 주요 내용
 - 생활임금 수준 : 시급 11,157원 / 월급 2,331,813원
 - ※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
 -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
 - ①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
 - ※ 공공근로 등 국비보조 사업은 적용 제외
 - ② 서울특별시 투자, 출자·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
 - ③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
 - ※ 수익창출형,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적용 제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